

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구 분	부과금액	비 고
○ 「수산업법」 제8조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	○어류·패류 등 양식어업: 헥타르당 10만원 ○정치망어업, 해조류, 복합양식어업: 헥타르당 3만원	○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총부과금액=(부과금액×연장 받은 연수)÷10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,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,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	○연안어업·새우조망어업·실뽕장어안강망어업·패류형망어업·근해어업: 어선 톤당 5천원 ○건간망어업·건망어업·들망어업·선인망어업·승망류어업·안강망어업·장망류어업·지인망어업·해선망어업: 헥타르당 3만원 ○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,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,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: 헥타르당 10만원	○부속선이 있는 어업의 경우 가공선 및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을 포함함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	○헥타르당 500만원(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은 200만원)	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또는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	○헥타르당 5만원	
○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자 -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-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	○건당 300만원 ○건당 250만원	○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함

-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	○건당 200만원	
○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	○0.1톤당 50만원	
○법 제52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별표 16에 따른 공유수면의 준설,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,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	○건당 500만원	
○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	○헥타르당 21만 6천원	

비고: 해당 어선의 총톤수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「선박법」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어선의 경우에는 그 톤수에 0.72를 곱하여 환산한 톤수를 말한다.